##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78 발의연월일: 2021. 8. 24.

발 의 자:오영환·박 정·서영교

홍정민 · 김영배 · 임호선

임오경 · 김주영 · 백혜련

장경태 · 김병기 · 문정복

유관석 • 김민철 • 김홍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재량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점검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협회로 하여금 안전점검 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방화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만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등에 필요한 피난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협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피난시설 개선에 필요한 조치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3항·제7항 신설, 제17조 등).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안전점검은"을 "안전점검 및 제7항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정한다"로 한다.

-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⑦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개선 건의)"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필요하다고"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방화시설의"를 "방화시설 및 피난시설의"로, "건의하여야"를 "요청하여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점검) ①・② (생	제16조(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 &lt;신 설&gt;</u>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
	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u>③</u> ~ <u>⑤</u> (생 략)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⑦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선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
	보하여야 한다.
$\underline{6}$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u>안전</u>	<u>⑧</u> <u>안전</u>
<u>점검은</u>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u>	점검 및 제7항에 따른 통보 등
바에 따른다.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u>정한다</u> .
제17조 <u>(개선 건의)</u> 협회는 제16조	제17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
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u>필요하</u>	<u>선 요청)</u>
<u>다고</u>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	<u>화재예방 및</u>

기관에 그 <u>방화시설의</u> 개선에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u>방화시설 및 피난시설의</u>
	<u>요청하여야</u>